

# 월간 주요 이슈

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(2023. 11. 15.)

## 섬유제품 안전인증 부담 완화된다

-가정용·아동용·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(안) 업계 소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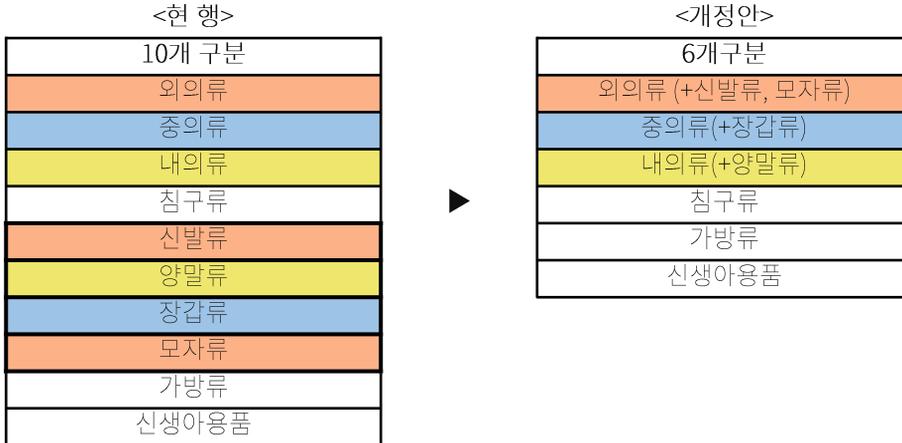
-모델 구분 단순화, 아릴아민 시험법 개선, 재사용 우모·수입연월 표기 허용

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진종욱)은 섬유제품 안전기준 3종(가정용·아동용·유아용 섬유제품)의 개정(안)을 11월 15일(수)부터 행정예고하고, 관련 업계의 이해 증진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.
- 이번 안전기준 개정(안)은 제품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.
-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 단순화 요구에 따라 동일모델 인정 범위가 확대되도록 제품 분류를 단순화\*하고, 유해물질인 아릴아민 검출 시험법을 절차가 복잡한 기존 방법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절차가 단순화된 시험법으로 대체하여, 시험 부담 및 비용을 경감하였다.  
\*기존 10개 분류를 6개로 통합(신발류,모자류→외의류, 장갑류→중의류, 양말류→내의류)
- 아울러, 동물복지, 친환경소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‘재사용 우모’ 용어를 표시 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수입제품의 경우, 제조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수입연월로도 표기 가능하도록 하였다.  
\*재사용 우모 : 제품에 한번 이상 사용하였던 우모(조류의 털)
-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관련 업계 관계자의 의견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국표원 홈페이지(kats.go.kr)와 산업부 홈페이지(motie.go.kr)을 통해 `24.1.13까지 60일간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.
- 진종욱 국표원장은 설명회에 참석하여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,“앞으로도 업계 의견에 귀기울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”라면서,“동시에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운영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❖ [참고] 가정용·아동용·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주요 개정 내용

□ 유아용 섬유제품 모델 구분 및 제품 구분 단순화

- (현행) 섬유제품 구분(예. 외의류, 중의류, 내의류 등), 조성 섬유 및색상에 따라 모델 구분 중
- (개정) 세분화된 제품 구분(10개)을 단순화(6개)하여 동일 모델 인정 범위 확대



□ 아릴아민 시험방법 개선

- (현행) 아릴아민 시험 방법으로 KS 표준을 인용 중이나, `21년 개정되며 기기분석 절차가 늘어나, 시험 소요 비용·기간이 2배 가량 증가 예상

\*기기분석 절차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나, 시험 비용 증가 불가피

- (개정) 정부 R&D 과제를 통해 절차가 단순한 시험방법을 개발하여 안전기준에 적용함으로써 시험 소요 비용 및 기간 등 현 수준 유지

□ '재사용 우모' 표시 가능

- (현행) 동물복지, 지속가능 패션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'재사용 우모' 용어 사용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, 표시 근거 미비

\*관련 표준에 따라 표기할 수 있으나, 재사용 우모는 표준 적용범위에서 벗어남

- (개정) 안전기준에서 '재사용 우모' 개념을 정의하고, 사용시 재질 및 혼용율 표시, 제품 분류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

□ 수입연월로 제조연월 대체표기 가능

- (현행) EU 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, 제조연월을 표시사항으로 규정

- (개정) 수입제품의 경우, '제조연월'을 나타내는 표시를 '수입연월'로 대체 표시하여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